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서울 행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62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2023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합계 147,396,63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



의3 제3호는 원고의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하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도분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그러나 원고는 위 제40조의3 제3호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까지 받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복지의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삭제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A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5조(법인의 설립허가)

-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앞서 본 주장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원고 자신이 위 제22조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사단법인 A'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사회복지법과는 별도 법률인 적십자사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아님이 분명하므로(즉 원고는 설립의 근거법률, 주무관청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이 달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별지

피고 목록

1. ○○특별시 ○구청장
2. ○○구청장
3. ○○시장
4. ○○구청장
5. ○○구청장
6. ○○구청장
7. ○○광역시 ○○○구청장
8. ○○광역시○구청장
9. ○○구청장
10. ○○광역시 ○구청장
11. ○○광역시 ○구청장
12. ○○구청장
13. ○○시 ○○구청장
14. ○○○시장
15. ○○시장
16. ○○시장
17. ○○시장
18. ○○시 ○○○구청장



19. ○○○시장
20. ○○시 ○○구청장
21. ○○시○○구청장
22. ○○시장
23. ○○시장
24. ○○시장
25. ○○시장
26. ○○구청장
27. ○○군수
28. ○○시 ○○구청장
29. ○○시 ○○구청장
30. ○○시장
31. ○○광역시○구청장
32. ○○시장
33. ○○시장
34. ○○시장
35. ○○시장
36. ○○시장
37. ○○시 ○○구청장
38. ○○시장
39. ○○시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40. ○○시장

41. ○○군수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별지

처분 목록

연번	처분명	고지서 일자	재산세 (A)	도시지역분 (B)	지방교육세 (C)	지역자원시설세 (D)	고지금액 총액 (A+B+C+D)	심판청구 기각결정
1	○○○구청장	2023.07.10.	536,620	581,940	107,320	912,140	2,138,020	2023.12.12 감 제5호증 (2023.12.14. 송달)
2	○○○구청장	2023.07.10.	272,640	288,750	54,520	411,110	1,027,020	
3	○○○구청장	2023.07.10.	4,160	2,330	830	-	7,320	
4	○○○구청장	2023.07.10.	893,620	1,000,860	178,720	1,660,360	3,733,560	
5	○○○시장	2023.07.07.	72,370	81,040	14,470	31,620	199,500	
6	○○○구청장	2023.07.10.	242,300	271,370	48,460	204,900	767,030	
7	○○○구청장	2023.07.10.	4,040	4,520	800	-	9,360	
8	○○○구청장	2023.07.10.	1,509,010	1,690,090	301,800	1,416,090	4,916,990	
9	○○○구청장	2023.07.10.	8,950	10,030	1,790	2,980	23,750	
10	○○○구청장	2023.07.06.	4,202,920	2,887,290	840,580	4,828,490	12,759,280	
11	○○○구청장	2023.07.17.	1,090,070	-	102,830	660,870	1,853,770	
12	○○○구청장	2023.07.13.	5,672,760	-	535,990	4,647,600	10,856,350	
13	○○○구청장	2023.07.06.	2,796,860	-	263,850	1,238,800	4,299,510	
14	○○○구청장	2023.07.07.	1,213,490	1,359,100	242,690	1,137,240	3,952,520	
15	○○○시 ○○구청장	2023.07.21.	2,073,080	-	230,710	1,520,890	3,824,680	
16	○○○시 ○○구청장	2023.07.21.	3,660	-	340	-	4,000	
17	○○○시 ○○구청장	2023.07.21.	2,130	-	200	-	2,330	
18	○○○시 ○○구청장	2023.07.10.	322,420	361,100	64,480	563,630	1,311,630	
19	○○○시장	2023.07.10.	1,240,980	1,389,890	248,190	1,163,630	4,042,690	
20	○○○시장	2023.07.07.	258,780	289,820	51,750	220,720	821,070	
21	○○○시장	2023.07.07.	481,620	539,400	96,320	434,640	1,551,980	
22	○○○시장	2023.07.07.	468,830	525,090	93,760	1,264,610	2,352,290	
23	○○○시 ○○구청장	2023.07.06.	96,760	108,380	19,350	130,390	354,880	
24	○○○시 ○○구청장	2023.07.06.	128,940	144,400	25,780	192,150	491,270	
25	○○○시 ○○구청장	2023.07.06.	132,840	148,780	26,560	199,650	507,830	
26	○○○시장	2023.07.07.	87,290	97,770	17,450	112,200	314,710	
27	○○○시 ○○구청장	2023.07.07.	97,290	108,960	19,450	130,090	355,790	
28	○○○시 ○○구청장	2023.07.07.	58,330	65,330	11,660	62,880	198,200	
29	○○○시 ○○구청장	2023.07.07.	62,110	69,560	12,420	68,880	212,970	
30	○○○시 ○○구청장	2023.07.07.	62,940	70,480	12,580	70,190	216,190	
31	○○○시 ○○구청장	2023.07.07.	70,280	78,710	14,050	82,650	245,690	
32	○○○시 ○○구청장	2023.07.07.	91,000	101,920	18,200	119,320	330,440	
33	○○○시 ○○구청장	2023.07.07.	91,230	102,180	18,240	119,760	331,41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34	○○○○시장	2023.07.06.	844,030	945,310	168,800	1,565,140	3,523,280
35	○○○○시장	2023.07.11.	381,520	427,290	76,300	338,550	1,223,660
36	○○○○시장	2023.07.05.	188,870	164,280	37,770	113,110	504,030
37	○○○○시장	2023.07.10.	338,130		31,890	125,410	495,430
38	○○○○시○○구청장	2023.07.11.	2,008,800	2,249,850	3,801,480	401,750	8,461,880
39	○○○○군수	2023.07.09.	1,187,780	1,330,300	237,550	1,112,560	3,868,190
40	○○○○군수	2023.07.09.	193,280	216,480	38,650	157,850	606,260
41	○○○○시○○구청장	2023.07.06.	547,200	612,870	109,440	497,610	1,767,120
42	○○○○시○○구청장	2023.07.06	1,175,730	1,316,810	235,140	1,100,990	3,828,670
43	○○○○시장	2023.07.09	619,510	693,850	123,900	567,030	2,004,290
44	○○○구청장	2023.07.14	519,060	581,330	103,810	933,020	2,137,220
45	○○○구청장	2023.07.14	137,210	153,670	27,440	104,010	422,330
46	○○○구청장	2023.07.14	7,230	8,090	1,440	2,310	19,070
47	○○○구청장	2023.07.14	211,820	237,230	42,360	175,640	667,050
48	○○○○시장	2023.07.08	142,820	159,960	28,560	109,410	440,750
49	○○○○시장	2023.07.11	40,900	45,810	8,180	19,070	113,960
50	○○○○시장	2023.07.06	332,930	372,680	66,580	291,910	1,064,300
51	○○○○시장	2023.07.06.	1,888,590	2,115,210	377,710	1,785,340	6,166,850
52	○○○○시장	2023.07.06.	390,700	218,780	78,130	159,830	847,440
53	○○○○시장	2023.07.10.	717,910	804,070	143,580	661,500	2,327,060
54	○○○○시○○구청장	2023.07.05	2,629,730	2,350,750	525,940	3,974,450	9,480,870
55	○○○○시장	2023.07.07	819,240	692,900	163,840	566,210	2,242,190
56	○○○○시장	2023.07.06	108,470	121,480	21,690	76,430	328,070
57	○○시장	2023.07.10	191,660	214,650	38,330	156,290	600,930
58	○○○○시장	2023.07.10	12,347,560	-	1,164,860	11,016,490	24,528,910
59	○○○○군수	2023.07.05.	601,570	673,770	120,310	549,810	1,945,460
60	○○○○군수	2023.07.05.	950	1,050	180	-	2,180
61	○○○○구청장	2023.07.10.	1,156,360	1,295,120	231,270	1,082,400	3,765,150
			54,079,880	30,382,880	11,681,270	51,252,600	147,396,630

2023.12.12
갑 제5호증
(2023.12.14.
송달)